한국 정치지도자들의 자유민주주의 개념: 제헌국회 이후 이승만 권위주의 등장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회의록을 중심으로

손병권(중앙대학교)

1. 연구의 배경

- 냉전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권력에 대한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원화됨
- 이러한 이원화 과정은 반공과 냉전, 정당의 성립과 정당정치의 전개, 효율추구의 발전국가의 등장, 권위주의체제의 성립,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저항 등이 요인이 되었음
- 한편으로는 이승만, 박정희 정권 등을 거치면서 등장한 중앙집권화된 1인체제의 정당, 대통령과 행정부 중심의 권위주의적 국가운영, 절차를 무시하는 발전국가의 효율주의, 미소냉전의 심화와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반공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했음
-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저항하는 민주세력과 시민사회의 성장은 저항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낳게 되었음

2. 연구의 목적

- 이 연구는 정부수립, 정당정치의 발전, 냉전의 심화, 권위주의적 국가운영으로의 진행과정에서 이승만대통령의 권위주의에 저항한 제헌국회 이후 한국 국회정치지도자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을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자유민주주의의 포괄적인 의미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함
- 건국 이후 정당.선거정치가 발달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해감과 동시에 냉전과 이에 편승한 이승만 권위주의체제의 심화과정에서 이승만에 저항한 제헌국회 이후 1950년 대 정치지도자들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을 본회의회의록을 통해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고 판단되며 정치엘리트의 생각을 직접 담아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로보임
- * 연구의 범위 및 원자료: 국회본회의 회의록을 통해본 '자유민주주의'의 개념을 제헌국회에서 제4대 국회까지 본회의 회의록을 통해서 검토해 봄

국회본회의 회의록: 아래 한글로 정리된 것과 스캔본이 있음; 스캔본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-> '국회본회의 속기록'

http://likms.assembly.go.kr/record/mhs-40-010.do

```
제20대(2016.05.30.~2020.05.29.)
제19대(2012.05.30.~2016.05.29.)
제18대(2008.05.30.~2012.05.29.)
제17대(2004.05.30.~2008.05.29.)
제16대(2000.05.30.~2004.05.29.)
제15대(1996.05.30.~2000.05.29.)
제14대(1992.05.30.~1996.05.29.)
제13대(1988.05.30.~1992.05.29.)
제12대(1985.04.11.~1988.05.29.)
제11대(1981.04.11.~1985.04.10.)
국가보위입법회의(1980~1981)
제10대(1979.03.12.~1980.10.27.)
제9대(1973.03.12.~1979.03.11.)
제8대(1971.07.01.~1972.10.17.)
제7대(1967.07.01.~1971.06.30.)
제6대(1963.12.17.~1967.06.30.)
국가재건최고회의(1961~1963)
제5대(1960.07.29.~1961.05.16.)
제4대(1958.05.31.~1960.07.28.)
제3대(1954.05.31.~1958.05.30.)
제2대(1950.05.31.~1954.05.30.)
제헌(1948.05.31.~1950.05.30.)
```

참고

* 제헌-4대 국회의 기간

제헌국회 1948년-1950년 5월 2대 국회 1950년 5월 - 1954년 5월 3대 국회 1954년 5월 - 1958년 5월 4대 국회 1958년 5월 - 1960년 7월 28일

* 제헌-4대 국회의장

<제허의회>

의장: 이승만, 부의장: 신익희, 김동원. 의장: 신익희, 부의장: 김약수, 윤치영.

<제2대 민의원>

의장; 신익희, 부의장; 장택상, 조봉암. 의장; 신익희, 부의장; 김동성, 조봉암. 의장; 신익희, 부의장; 조봉암, 윤치영.

<제 3 대 민의원>

의장; 이기붕, 부의장; 최순주, 곽상훈, 조준규. 의장; 이기붕, 부의장; 조준규, 황성수, 이재학.

<제 4 대 민의원>

의장; 이기붕, 부의장; 이재학, 한철희, 임철호.

의장; 곽상훈, 부의장; 김도연, 이재영.

3. 연구의 방법

- * 특정개념의 의미를 설명할 경우(혹은 동일한 개념에 대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경우) 어떤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의 문제 -> 개념과 관련된 제반 요소를 종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
- 개념 자체의 의미를 설명할 수도 있음 -> '자유민주주의' 혹은 '민주주의'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의적인(definitional) 언급이 자료(예컨대: 본회의회의록)에 나타날 수 있음
- 또는 개념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음(혹은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): 개념 활용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가능함 -> 예컨대 이승만대통령의 경우 1954년 4사5입 개헌 (대통령 중임제한 철폐개헌)과정에서 '국민투표제'를 헌법에 포함시키면서(자유당의 제안) 이를 반공을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수 있음 -> 조병옥 등의 평화통일론을 국민의 의사를 통해서 견제하려는 의도
- 또는 개념에 의해서 시사되는 혹은 포괄되는 요소의 선택과 피선택 요인에 대한 강조 정도 혹은 개념작동의 필요조건을 설명할 수도 있음 -> 예: '민주화'는 1987년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의미했다면 제헌국회에서 헌법제정 당시의 '민주화'는 권력분산의 분산을 의미했을 수 있음

- * 이렇게 볼 때 건국초기와 1950년대 냉전의 전개와 함께 이에 편승한 이승만대통령의 통치양식의에 대항한 정치엘리트들의 '자유민주주의'를 검토할 경우 역시 위에 적은 기존을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에 포괄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추출해 볼 수 있음
- * 이러한 작업을 국회 본회의회의록을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'자유민주주의'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건국초기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당대에서 사건들을 추려서, 이러한 사건에 관한 국회회의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*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필자는 대강 헌법 및 국회법 제정과정, 반민법, 국회프락치사건, 내각책임제 개헌안, 여순반란사건, 국민방위군 사건, 거창양민학살 사건, 1952년 직선제 개헌안(5.26 부산정치파동; 제1차 정치파동; 발췌개헌)과 계엄령, 1954년 사사오입개헌 및 개헌안(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, 국민투표제: 제2차 정치파동), 진보당 사건, 국가보안법 개정안 제출 및 통과(12월 24일; 24변란; 제3차 정치파동), 조병옥의 평화통일론과 자유당의 국시위반론 등의 사건을 추려보았음(아래 참고문헌의 이것이 국회다!를 중심으로 선별) ->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회의록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므로 이를 다시 자료를 보아 가면서 선별하거나 혹은 위의 주제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찾아보고자 함 -> 선별적으로 본 바 대강 본회의회의록에 국회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
- 이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본회의회의록을 보면서 '자유민주주의' 개념의 의미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함
- 4. 연구의 예시
- 1) 제헌국회 1차회의 3차 속기록(1948년 6월2일(수) 상오 10시) -> 헌법 및 정부조직법, 국회법 기초위원 선정과 관련된 국회회의록 가운데 일부 발췌 및 요약 내용
- * 국회 전형의원 보고 ->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국회법과 국회규칙 작성위원(기 초위원) 선정 발표
- * 이윤영 전형위원 발표 -> "결국에 있어서는 각 지역을 평균히 할 수 있는 대로 대표하게 해서 이 헌법과 국회법 이런 중요한 일을 기초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인 줄로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전형위원들은 이 전체 결의의 그 정신에 근본해서 제일 먼저는 각 지역을 평균히 대표하게 하도록 그와 같이 원칙을 정하고 지금 현재의 198명을 도별로 나누어서 거기의 비율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위원을 내도록 그와 같이 작정했습니다."

- * (20쪽 우측) "우리들이 각각 각 도에서 그 선출된 전형위원들이 그 도의 인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원은 다른 도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냐 할 것 같으면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도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보다 정확히 잘 아는 그러한 관계로 그분이 전형을 해서 내놓아가지고 우리 전체 전형위원회에서 그것을 평정하기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."
- * 먼저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입니다.

류성갑, 김옥주, 김준연, 오석주, 윤석구, 신현돈, 백관수, 오용국, 최규옥, 김명인, 이 종린, 이훈구, 유홍열, 연병호, 서상일, 조헌영, 김익기, 정도영, 김상덕, 이강우, 허정, 구중회, 박해극, 김효석, 김병회, 홍익표, 서성달, 조봉암, 이윤영, 이청천, 이상 제씨는 삽십 분입니다. 삽십 분인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으로 전형해서 보고합니다.

* 다음은 국회기초위원 15인이올시다. 장기영, 전진한, 최윤동, 이원홍, 김약수, 김장열, 정광호, 김봉두, 배헌, 김명동, 성낙서, 정구삼, 이유선, 서정희, 윤치영, 이상 제씨는 국회법 기초위원 15인이올시다.

- * 한암회의원(대한독립촉성국민회) 반 -> 노동자, 농민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
- * 서순영의원(무소속) 반대-> 다 전형의원에게 맡긴 것은 아니다. 변경할 것이 있으면 변경하자.
- * 이항발의원(무소속) 반대 -> 우리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"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전형위원을 선출해서 국회법 또는 헌법을 제정하는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부여해왔읍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심사해야 되겠읍니다.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 또 농민을 위한 주로 농민 노동자를 근거로 헌법을 제정해 주시기 저는 바라고 이로써 끝을 마칩니다."
- * 이구수(무소속) 반대 -> 농민이 없다
- * 조국현(대성회) 반대 -> 6대 종교의 대표가 없다. 이남규에 절대 찬성; 기초의원 거부
- * 조한백 반대-> 시간이 걸려도 무작정 받을 수는 없다
- * 신성학(무소속) 반대: 시간이 걸려도 더 논의하자: "우리가 삼천만이 갈망하고 있는 대변자라고 할 것 같으면 오날밤을 여기서 세우드라도 시간을 충분하게 얻어서 다시

금 이 일에 대해서 심사할 기회를 얻어야 될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올시다."

- * 최헌길(독촉) 찬성 -> "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되 전형위원과 여기에 당선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너무도 시간과 날자를 천연시키지 말고 오직 우리가 세 가지 논란점으로 우리가 말다툼하였으니 오죽 원안대로 이 시간내에 가결해서 우리가 원만한 가운데에 일시일분이라도 빨리 우리 정부 수립 착수에 돌진해야 하겠고 동시에 이 임무를 준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신념을 가지고 이 다음 국가 일을 작정하고 동시에 의장께서도 속히 속히 이 문제를 원안대로 오날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 자리에서 비는 것이올시다."
- * 조국헌(대성회) 반대 -> 연기식으로 하자; + 전남은 전형위원 소환하겠다 "우리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기초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. 독립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일이 늦다고 하드라도 될 수 있으면 심의에 심의를 더 잘해야 될 것입니다. 만일이것을 이대로 내가지고 손해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을 통과할 때에 이것보다 더 지연이 10일 20일이 되여서 독립이 지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냥 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동시에 우리 전남은 전형위원을 소환시키겠는데 소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토의하고 싶읍니다. 우리는 전남에서 다시 토의하고저 합니다."

(「전남만은 유보해주시요」, 「전형위원을 불신임해요」하는 이 있음)"

- * (28쪽) 김약수(조선공산당) -> 반대 -> 도별로 하면 대정당의 암약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함: "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인부터도 결정적으로 도별적으로 안하면 안되겠다는 주장에 가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인사 문제를 결정할 때에 너무도 소칭 대정당이나 단체의 암약이 너무도 심한 까닭으로 그것을 좀 제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치단결하는 체제를 표현시키기 위해서 도별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런 소칭 대정당의 암약이 좀 중단이 될 것이라는 이런 고충에서 나온 것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반 또 전형해온 것을 보면 여전히 도별이라고 하는 그 윤곽을 따라가지고 소칭 대정당의 또 대정당적 방법이 순환적으로 돌고 있어요. 그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합류, 즉 소칭 대정당과 금반 순수한 지방 여러분과의 조화가 되고안되고 하는 문제로 국회가 잘 운행하겠느냐 그 운명이 거기에 매달린 것입니다.
- * 서용길(무소속) -> 반대: 신익희 3안 건 표결처리 의사에 반대 -> **전남은 전형위원** 을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표결이 말이 되나?
- 2)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본 당시의 상황(자유민주주의 관련 내용포함)
- * 상당 수준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짐

- 그리고 회의의 규칙이 상당히 엄격히 지켜짐
- 언권을 두고 시비가 있음
- 동의, 개의 등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음
- *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존경이 있음
- 이승만의 자리배려 문제 -> 도별로 하면 이승만이 자기보다 뒤에 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; 외국의 축하공함에 대한 답변위원을 이승만이 결정하라는 동의
- * 이승만은 주로 회의를 서둘러 진행하려 하고, 의원들의 조목조목 토론하려 함
- * 민주성은 절차가 매우 중요시되고 심의를 중요시함; 의원들은 개별지역구대표성보다 전국대표성을 중요시함
- * 헌법과 국회법 기초위원에 노동자 농민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됨
- * 전형위원의 권한이 추천이냐 선정이냐 -> 만약 이를 그대로 받는다면 이는 선정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됨(서우석) -> 이러한 주장은 전형위원의 보고가 있는 당일 헌법기초위원와 국회법 기초위원을 결정하자는 제안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임
- * 전형위원이 도에서 한사람씩 나와서 30명과 15명을 선발했으나 이들 45인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 전체 의원이 심의함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됨(이남규)
- 3) 잠정 결론
- * 전체적으로 위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하여 **대표성과 절차성**을 편의성에 앞세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; 국가전체의 일을 일부에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임 -> 분파(faction)보다는 전체의원이 전체명단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됨
- * 전형위원의 추천 위원 45인의 명단을 수용할 것인가의 과정을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대정당보다는 소정당, 전국대표성, 국가전체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형위원과 헌법위원, 국회법위원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강함 -> 이를 위해서 신속성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심의성의 논리가 초기 제헌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됨

참고문헌

국회본회의 회의록:

아래 한글로 정리된 것과 스캔본이 있음; 스캔본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

http://likms.assembly.go.kr/record/mhs-40-010.do

- 강정인 외. 2009.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: 보수주의, 자유주의, 민족주의, 급진주의. 서울: 후마니타스.
- 김세중. 1994. "제 1, 2 공화국 하에서의 민주당 : 정치발전에 있어서의 역할을 중심으로." 國史館論叢. 제54집: 151-174.
- 노재봉. 1985. "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," "한국민족주의와 자유주의," "한국정치 와 이데올로기." 思想과 實踐: 現實政治認識의 基礎. 서울: 녹두, 1985
- 박경미. 2010. "제1공화국의 정당 교체: 자유당과 민주당 형성." *한국정당학회보*. 제9 권 제1호: 5-37.
- 박상섭. 2012. "한국 정치와 자유민주주의: 현대 한국 정치사의 정치사회학적 이해를 위한 시론." *국가, 전쟁, 한국*. 고양: 인간사랑.
- 백영철. 1991. "第1共和國의 議會政治에 관한 研究; 議會와 行政府關係를 中心으로." 한국정치학회보. 25(1): 133-158.
- 백운선. 1988. "李承晚세력의 政治的 헤게모니 과정: 第1共和國." *思想과 政策.* 20: 186-197.
- 변동명. 2007. "제1공화국 초기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." *민주주의와 인권*. 제7권 제1호: 85-121.
- 서복경. 2016. 한국 1세대 유권자의 형성 제1 · 2공화국의 선거. 한국의 선거 60년사 1. 서울: 마인드탭.
- 심지연. 2009. 한국정당정치사: 위기와 통합의 정치. 서울: 백산서당.
- 李正馥, 吉昇欽, 黃秀益, 金世均, 孫浩哲. 1997. "자유당 정권시기의 한국정치." *省谷 論叢*. 第28輯 3卷: 65-210.
- 이호진, 강인섭. 1988. 이것이 국회다!. 서울: 삼성출판사.
- 이형. 2016. 한국의정사 30년: 제헌국회에서 10대까지. 서울: 청아출판사.
- 임종명. 2005. "제1공화국 초기 대한민국의 가족국가화와 內破." *한국사연구*. 130: 89-329
- 진덕규. 1990. *1950年代의 認識*. 서울: 한길사.